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72
------	------

2017. 4. 2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7일, 신건택의원외 17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1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7.4.2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신건택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부칙에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12월 말일까지 투자·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나.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해당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의 유효기간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청년실업현황 및 서울시의 일자리창출사업

-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경제가 지속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을 제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7%보다 약 2.6배 높은 9.8%를 기록했으며, 매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이하 “시”)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청년실업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도에는 10%가 넘는 실업률을 보여, 시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최근 3년간 실업률 〉¹⁾

(단위:%)

구분	연령계층별	2014	2015	2016
전국	전체	3.5	3.6	3.7
	15 - 29세	9.0	9.2	9.8
서울특별시	전체	4.5	4.2	4.3
	15 - 29세	10.3	9.3	10.3

- 이에따라 시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담당관’을 두고, 청년의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17년 청년일자리사업에 2천 5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뉴딜일자리, 강소기업 고용지원 등 약 6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시도·연령별 실업률

다.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정원이 30명 이상인 시의 투자·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시에는 서울메트로, 농수산식품공사 등 6개의 투자기관과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14개의 출연기관 및 출자기관인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투자·출자·출연기관이 존재함. [참고자료1]
- 21개의 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미만인 장학재단(8명), 평생교육진흥원(15명), 디지털재단(17명)과 2016년 신설된 에너지공사와 50플러스재단 및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서울연구원, 시립교향악단을 제외한 14개 기관의 총 정원은 21,245명으로, 정원의 3%는 637명임.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안 제4조에서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임.²⁾

- 2016년 각 기관의 청년고용 실적을 살펴보면, 조례가 적용되는 14개 기관은 정원의 3%인 637명의 2배가 넘는 1,519명(7.2%)의 청년을 신규채용하였으며,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3%의 청년고용 의무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남.[참고자료2]

라. 청년고용의무조항의 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지난 12월, 관련 법령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의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을 준용하여 조례 또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조항의 시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지난해 시의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률은 7.2%로 2015년 3.2%(정원 20,758명 중 655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동 조항이 시의 투자·출자·출연기관이 청년 고용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공공에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조항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두는 것은 타당한 조치임.

마. 청년고용현황 제출 기한 변경 (안 제4조제3항)

- 안 제4조제3항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기존 조항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각 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12월 말일까지 시장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출자·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출자·

<p>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2월 말일까지 투자·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12월 말일까지 투자·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 이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2017년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맞춰 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2016년 청년고용실적’의 제출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제출시기를 변경하여 해당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지난해의 각 기관 청년고용현황 자료가 서식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제출시기의 변경을 통해 본 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11월 30일까지 각 기관별 청년고용현황을 제출받을 경우, 기존 연간 고용실적을 제출받는데 반해 11개월간의 자료만을 제출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확한 연간 고용현황 관리를 위해 이전의 제출시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또한 정확한 고용실적 집계를 위해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와 함께 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창출을 넘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72
----------	---------

제안년월일 : 2017년 4월 21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청년고용현황의 제출 시기 조정에 따라 부정확한 고용 실적의 집계가 우려되어, 기존 원안의 제출 시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는 청년고용현황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현행대로 제출시기를 조정함.(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2월 말일까지 투자·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 의 청년 고용 확대)</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 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u>매년 1월 31일까지</u>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 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u>2월 말일까지</u> 투 자·출자·출연기관 전체 청 년고용 실적을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u>출자·출연기관</u> 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 고용 비율이 낮은 <u>출자·출</u> <u>연기관</u>에 대해서는 청년고 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 의 청년 고용 확대)</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 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u>매년 11월 31일까지</u>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 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u>12월 말일까지</u> 투 자·출자·출연기관 전체 청 년고용 실적을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u>투자·출자·출연</u> <u>기관</u>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 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 은 <u>투자·출자·출연기관</u>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 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 의 청년 고용 확대)</p> <p>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 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u>매년 1월 31일까지</u>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 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u>2월 말일까지</u> 투 자·출자·출연기관 전체 청 년고용 실적을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청년 구직자 채용은 투자·출자·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2월 말일까지 투자·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투자·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의 청년 구직자 채용은 투자·출자·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한다.</p> <p>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2월 말일까지 투자·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의 청년 구직자 채용은 투자·출자·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한다.</p> <p>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2월 말일까지 투자·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투자·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